FORENA | THE SHARP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6.01.30.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3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1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분양보증

(분양문의) 1551-1491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상인천초교주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한화 건설부문	㈜포스코이앤씨
법인등록번호	124771-0002830	110111-0002959	174611-0002979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23, 403호(간석동, 수경프라자)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구분	건축	전기	소방·통신
상호	㈜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화기술단	㈜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금액	₩9,475,092,000원	₩1,664,450,700원	₩1,368,400,000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25-101-0002000호	₩304,319,145,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 공급일정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6.02.09.(월)	2026.02.10.(화)	2026.02.11.(수)	2026.02.20.(금)	2026.02.24.(화) ~ 2026.02.27.(금) 10:00 ~ 16:00	2026.03.03.(화) ~ 2026.03.05.(목) 10:00 ~ 16:00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PC·모바일) 청약홈	•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견본주택(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 • 문의 : ☎1551-1491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분양대금 납부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 - 1572호(2026.01.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4층, 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568세대(조합 1,703세대, 임대 130세대) 중 일반분양 735세대
[특별공급 398세대 (기관추천 72세대, 다자녀가구 72세대, 신혼부부 168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6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025000572	01	049.9664	49	49.9664	24.0882	74.0546	42.7552	116.8098	27.3835	46	4	4	10	1	4	23	23	2
	02	059.9954A	59A	59.9954	25.1056	85.1010	51.3368	136.4378	31.4682	383	38	38	88	11	34	209	174	32
	03	059.9800B	59B	59.9800	26.0227	86.0027	51.3236	137.3263	31.8016	306	30	30	70	9	27	166	140	11
합 계										735	72	72	168	21	65	398	337	4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5%) 1차 (계약 시)	2차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60%) 1차(10%) 2026.08.17	2차(10%) 2027.03.15	3차(10%) 2027.10.15	4차(10%) 2028.04.17	5차(10%) 2028.10.16	6차(10%) 2029.03.15	잔금(35%) 입주지정일
49	46	124동 3,4호	1층	1	170,881,588	276,452,412	447,334,000	10,000,000	12,366,700	44,733,400	44,733,400	44,733,400	44,733,400	44,733,400	44,733,400	156,566,900
			2층	2	175,490,800	283,909,200	459,400,000	10,000,000	12,97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160,790,000
			3층	2	179,310,800	290,089,200	469,400,000	10,000,000	13,470,000	46,940,000	46,940,000	46,940,000	46,940,000	46,940,000	46,940,000	164,290,000
			4층	2	183,130,800	296,269,200	479,400,000	10,000,000	13,97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167,790,000
			5-10층	12	186,950,800	302,449,200	489,400,000	10,000,000	14,47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171,290,000
			11-20층	17	190,770,800	308,629,200	499,400,000	10,000,000	14,970,000	49,940,000	49,940,000	49,940,000	49,940,000	49,940,000	49,940,000	174,790,000
			21층 이상	10	192,680,800	311,719,200	504,400,000	10,000,000	15,220,000	50,440,000	50,440,000	50,440,000	50,440,000	50,440,000	50,440,000	176,540,000
59A	383	101동 109동 121동 1,3호	1층(117-103)	1	220,615,314	356,911,686	577,527,000	10,000,000	18,876,350	57,752,700	57,752,700	57,752,700	57,752,700	57,752,700	57,752,700	202,134,450
			1층	11	220,643,200	356,956,800	577,600,000	10,000,000	18,88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202,160,000
		103동 104동 108동 118동 122동 1,2,4호	2층	32	231,606,600	374,693,400	606,300,000	10,000,000	20,315,000	60,630,000	60,630,000	60,630,000	60,630,000	60,630,000	60,630,000	212,205,000
			3층	32	236,649,000	382,851,000	619,500,000	10,000,000	20,975,000	61,950,000	61,950,000	61,950,000	61,950,000	61,950,000	61,950,000	216,825,000
			4층	32	241,653,200	390,946,800	632,600,000	10,000,000	21,63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221,410,000
		105동 117동 119동 120동 1,3,4호	5-10층	127	246,695,600	399,104,400	645,800,000	10,000,000	22,29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64,580,000	226,030,000
			11-20층	66	251,738,000	407,262,000	659,000,000	10,000,000	22,95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230,650,000
			21층 이상	82	254,259,200	411,340,800	665,600,000	10,000,000	23,280,000	66,560,000	66,560,000	66,560,000	66,560,000	66,560,000	66,560,000	232,960,000
59B	306	101동 105동 109동 117동 119동 120동 121동 2호	1층(117-102)	1	224,760,396	363,617,604	588,378,000	10,000,000	19,418,900	58,837,800	58,837,800	58,837,800	58,837,800	58,837,800	58,837,800	205,932,300
			1층	9	224,761,160	363,618,840	588,380,000	10,000,000	19,419,000	58,838,000	58,838,000	58,838,000	58,838,000	58,838,000	58,838,000	205,933,000
			2층	11	231,186,400	374,013,600	605,200,000	10,000,000	20,26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211,820,000
			3층	11	236,228,800	382,171,200	618,400,000	10,000,000	20,92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216,440,000
		103동 104동 108동 118동 122동 3호	4층	11	241,233,000	390,267,000	631,500,000	10,000,000	21,575,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221,025,000
			5-10층	69	246,275,400	398,424,600	644,700,000	10,000,000	22,235,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225,645,000
			11-20층	98	251,279,600	406,520,400	657,800,000	10,000,000	22,89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230,230,000
			21층 이상	96	253,800,800	410,599,200	664,400,000	10,000,000	23,22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232,54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급금액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40-015-842760	상인천초교주변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①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계약 시)	잔금90%(입주 시)	비고
49	11,500,000	1,150,000	10,350,000	-
59A	14,000,000	1,400,000	12,600,000	-
59B	14,000,000	1,400,000	12,600,000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자재발주, 공정관리 등의 사유로 변경계약 등은 불가능합니다.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804-862998	㈜한화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I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체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및 신청자격

구분(약식표기)			49	59A	59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6	4	10
	장기복무제대군인		1	5	4	10
	10년이상 장기 복무군인		-	6	4	10
	중소기업근로자		-	6	5	11
	장애인	인천광역시	1	5	5	11
		서울특별시	1	5	4	10
		경기도	1	5	4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50%)		2	19	15	36
	서울특별시·경기도(50%)		2	19	15	36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88	70	16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1	9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4	34	27	65
합 계			23	209	166	39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처리방법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구분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처리방법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처리방법 : 모두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2.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지역'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일반공급 공통사항 및 신청자격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지역'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②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참조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 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